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40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의자 : 박광온 · 최인호 · 이학영

권칠승 · 김종민 · 이찬열

백혜련 · 황희 · 정재호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생 략) 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 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 여 <u>계리하여야</u> 한다.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회계처리하여야</u> ----